Korean J Leg Med 2019;43:1-6
https://doi.org/10.7580/kjlm.2019.43.1.1

종 설

행정검시와 해부명령에 관한 현행법령 고찰

김윤신[1] · 김태은[2]

[1]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2]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Review of Legal Codes Governing Administrative Death Investigations and Autopsy by Administrative Order

Youn Shin Kim[1], Tae Eun Kim[2]
[1]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Chosu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Gwangju, Korea,
[2]Department of Law, Chosun University College of Law, Gwangju, Korea

Under current law, there are two paths for death investigations: administrative and judicial. A proper death investigation system is essential to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the human rights of those involved and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the judicial system as a source of ensuring the security of society. These objectives are accomplished through the accurate, professional,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death investigations by qualified experts. The present study aims at reviewing and uncovering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egal codes governing administrative death investigations and autopsy by administrative order. The main problem being that no clear legal statements exist regarding the qualifications of persons responsible for administrative postmortem inspections and administrative autopsies; the problem is the same for any death related to crime. At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the authors propose that legal codes regarding the scope of postmortem inspections or autopsies to determine the cause and manner of death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that the qualification standards for experts examining any desceased individual should be legislated.

Key Words: Corpse; Death investigation; Administrative inspection; Administrative autopsy

Received: October 5, 2018
Revised: February 15, 2019
Accepted: February 21, 2019

Correspondence to
Youn Shin Kim
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Chosu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309 Pilmun-daero, Dong-gu, Gwangju 61452, Korea
Tel: +82-62-230-6998
Fax: +82-62-234-4584
E-mail: ysk007fm@hotmail.com

서 론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각자의 고유한 검시제도를 통해 국민의 죽음에 대한 사법적 감시 및 행정적 관리기능을 수행하며, 이러한 제도의 내용은 그 사회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범죄와의 관련 여부를 떠나 모든 사망에 있어서의 명확한 사인규명은 사회정의 구현과 인권보호 차원에서는 물론,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죽음에 대한 통계자료 확보를 통하여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1]. 그러나 '사법검시위주'인 우리나라의 검시제도는 검사에게 검시의 권한이 맡겨져 있어 범죄로 인한 사망의 조사를 통한 치안유지 등 사법목적에만 치중되고, 사망원인 통계나 질병예방을 위한 검시의 사회적, 행정적 기능은 소홀히 되고 있어, 행정부검의 기능과 역할이 원시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된다[2]. 우리의 현행법에서는 검시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다만, 사인 불명의 죽

pISSN 2383-5702
eISSN 2383-5710
©Copyright 2019 by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Medicin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음으로서 국민보건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시체해부법 제6조),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죽음(감염병예방법 제20조), 특정 감염병으로 사망한 사체의 검안(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5조, 결핵예방법 제8조), 검역감염병과 관련된 시체(검역법 제15조) 등에 대해서는 법원의 관여 없이 행정기관이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행정검시의 절차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무연고 시체의 처리 등 제한적인 경우 외에는 행정검시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3].

행정검시란 범죄와 관련이 없는 시체에 대한 행정검시의 요령을 규정하여 시체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편익의 도모와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할 목적으로 제정된 '행정검시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죽음의 원인이 범죄와는 관계없는 변사체에 대하여 신원확인, 사인규명, 감염병예방, 시체처리 등의 행정목적을 위해 시행되는 검시를 말한다[2]. 즉,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서의 경찰관에 의한 검시조서 작성(가족관계등록법 제90조), 시체해부명령(시체해부법 제6조), 이상발견시의 조치(시체해부법 제11조), 검역감염병에 대한 검역조치(검역법 제15조) 등이 행정목적을 위한 검시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들이다.

행정검시와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 죽음에 대한 사인규명의 절차를 규정하는 제도가 해부명령이다. 이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위험성이 있는 감염병의 관리 또는 보건정책과 관련한 질병예방을 위해 필요에 따라 시체해부를 명령하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명령의 권한을 갖는다. 시체해부법에서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와 해부의 자격 및 명령권자를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은 국민보건을 위한 사인규명 목적의 시체해부명령,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증 및 감정으로서의 해부,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치로서의 해부,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에 의한 해부 등이다. 그에 따라,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해부는 행정부검, 사법부검, 그리고 의학적 목적의 해부(병리부검)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행정검시규칙(제3조, 제4조)에 따르면, 지구대장 등의 보고를 거쳐, 경찰서장이 행정검시 대상 여부를 판단, 명령할 수 있고, 이어 의사의 검안을 거쳐 행정검시 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검시결과 범죄와의 관련성이 의심될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렇듯 행정검시와 행정부검, 해부명령, 사법부검 등 용어의 개념과 실무적 적용에 상당한 혼선이 있다. 행정검시의 결과는 사법부검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나, 행정검시는 경찰서장이, 사법부검은 검사와 판사가, 행정부검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지자체장, 검역소장이 각각 권한을 갖고 있어[4], 검시에 관한 형사사법적인 절차, 보건정책 및 행정상의 절차가 개별법마다 따로 규정되어 있어 죽음과 사인의 조사에 있어 유기적 통합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2].

본 연구를 통해 저자들은 행정검시와 행정부검, 그리고 해부명령에 대한 현행법령을 조사하여, 사법검시와의 관계, 각각의 담당자 또는 명령권자, 실제 검시 또는 해부를 수행할 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검토함으로써, 그 입법상의 미비점과 실무적 적용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체의 조사와 사인규명을 위한 제도를 총괄할 수 있는 단일법의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본 론

본 연구에서는 '사법검시위주'인 우리의 검시제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행정검시 및 해부명령에 대한 법령의 내용과 그 적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법과 규칙, 현실사회 속에서의 이들의 적용상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검시(檢視)와 검시(檢屍), 행정검시, 사법검시, 해부와 부검, 사법부검, 행정부검, 병리부검, 해부명령 등의 단어를 입력하여,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탑재된 법령과 행정규칙을 검색하였다. 그중 본 연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는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의료법」, 「검역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결핵예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행정검시규칙(경찰청 예규 제503호)」 등 12개의 법령을 찾았다. 여기에 선행연구의 결과를 반영하고, 관련 판례를 추가하여, 행정검시와 사법검시, 행정부검과 해부명령의 경우와 차이, 그 관여자 및 업무수행의 법적 자격 등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1. 행정검시의 현행법

수재, 낙뢰, 파선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또는 행려병사자로서 범죄에 기인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시체가 행정검시의 대상이 된다(행정검시규칙, 제2조). 이 규칙에 따르면 지구대장 등은 행정검시의 대상으로 판단되는 시체를 발견하면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행정검시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행정검시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서장에게 있으며, 이어 지구대장은 의사의 검안을 거쳐 행정검시조서를 작성하게 된다(제3조). 그러나 행정검시 과정에서 범죄에 기인한 사망으로 의심될 경우, 지구대장은 다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므로(제4조), 이후에는 사법검시로 전환되게 된다. 대법원도 "자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체가 발견된 경우에, 그 사인이 자살과 같이 범죄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변사자나 변사의 의심이 있는

 https://doi.org/10.7580/kjlm.2019.43.1.1

사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시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14932 판결)하여 자연사, 외인사, 자살 등 죽음의 대상에 따라 검시의 종류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90조(등록불명자 등의 사망)에서는 사망자에 있어,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검시조서를 작성·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망자의 신원이 불명인 경우, 그 사망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함에 있어 경찰관에게 조사와 통보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검시조서를 작성하여 사망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행정검시의 일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경찰관이 개입하지 않는 행정검시도 현행법상 가능하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에서도 감염병의 예방조치로서의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와 결핵예방법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에서 감염인 혹은 환자의 사체에 대한 '검안'을 규정하고 있고, 검안은 '검시'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후천성면역결핍증이나 결핵으로 사망한 시체에 대한 검시는 물론,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제23조(시험 및 의학적 검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상자에 대한 검시'도 행정검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행정검시규칙에서 '범죄에 기인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시체'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검시에 있어서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에 관한 기준은 현행법상 발견되지 않는다. 단지 의사의 검안을 거쳐 지구대장이 행정검시조서를 작성해야 한다(제3조)고만 규정하고 있다. 앞의 설명처럼 검시는 검안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현행법상 검안의 자격에 대한 규정을 검색해 본 바, 의료법(제17조)의 규정이 유일해 보인다. 거기에는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직접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검안서를 작성하지 못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해석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의사는 물론, 치과의사, 한의사도 검안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유추될 수 있을 것이나, 행정검시규칙에서 정하는 검시의 자격에 있어, 의사의 검안이라는 규정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2. 해부명령과 행정부검의 현행법

행정부검이란 시체해부법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부검으로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확실한 변사체, 특히 전염병, 행려사망자, 사고사(재해사 포함), 병사이나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은 사인 불명례 또는 사망의 종류가 불확실한 시체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집행하는 부검을 말한다[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체를 해부하지 않고는 그 사인을 알 수 없거나, 이로 인하여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의 명령으로 시체의 해부를 통해 사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규정이다(시체해부법 제6조 시체해부명령). 또한 검역법(제15조)에 따른 검역조치로서,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를 해부할 수 있고, 감염병예방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이 되어 해부를 통한 감염병 진단과 사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체 해부를 명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해부명령이란 행정부검의 일부인 것으로 이해된다.

해부명령에 있어서 그 명령권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는 시체해부법, 감염병예방법, 검역법이 있다. 시체해부법에 따른 해부명령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방부장관(군인의 시체인 경우), 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이 명령권한을 갖고, 해부명령권에는 해부를 담당할 자를 지정할 권한도 포함된다(시체해부법 제2조, 제6조). 비슷한 경우로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에 의한 사인을 밝히거나, 감염병의 예방조치로서도 해부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권한을 갖는다(감염병예방법 제20조, 제49조). 아울러,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에 대한 검역을 통해 국내외로의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검역소에서도 해부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권한은 검역소장에게 있다(검역법 제15조 검역조치).

행정검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부명령에 있어서도 해부의 자격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현행법상 해부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령으로는, 시체해부법(제2조 시체해부)과 감염병예방법(제20조 해부명령)이 있다. 두 법에 따르면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치과의사 포함)와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포함)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 감염병 전문의, 해부학, 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사람 등이 해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사, 한의과대학을 포함한 의과대학 교수, 감염병 전문의, 해부학, 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해부의 자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부의 자격은 행정부검이나 사법부검을 위한 자격규정이라기보다는,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 대한 해부교육과 의학 연구목적을 위한 해부를 위주로 한 자격규정으로 생각된다. 시체해부법은 위와 같은 해부자격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 말고는, 시체해부법 제6조의 내용인 시체해부명령에 대해서도 해부의 자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감염병예방법에서만 감염병 전문의, 해부학, 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사람을 해부를 담당하는 의사로 지정하여 해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해부 담당의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해당 부령인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살펴보면, 조문의 제목처럼 해당 시설 기준과 시체의 관리방법, 해부로 인한 오염의 주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의 주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부 담당의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더불어,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해부하는 경우(검역법 제15조, 검역조치)에 대해서도 해부를 위한 자격 규정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이를 종합하면, 시체해부법(제2조)에서 규정한,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치과의사 포함)와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포함)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사람(또는 교수), 그리고 감염병 전문의가 행정부검에서의 시체해부에 대한 자격을 갖는 것으로 유추될 수 있을 따름이다.

고찰 및 결론

현대사회에 있어서 국민의 죽음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사인규명은 사회정의 구현 및 인권보호 목적과 함께, 병사 및 사고사에 대한 통계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보건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원천이 되어야 하지만[1], 죽음의 조사 권한이 검사에게 주어짐으로써 사망조사의 목적이 오직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에만 매몰되어, 감염병의 예방이나 사인통계의 적정한 품질보장을 위한 검시의 사회적, 행정적 기능은 등한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검시제도의 현실이다[2]. 따라서 사인 불명의 죽음에 대한 사인규명, 후천성면역결핍증이나 결핵 등 감염병의 예방, 검역감염병에 대한 검역조치로서의 검시 등 법원의 관여 없이 행정기관이 실시할 수 있는 행정검시제도는 사문화되어 버린 실정이다[3]. 사망원인통계는 죽음을 조사하고 사인을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인 검시제도의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검시를 통한 사인확인 비율이 전체 사망 수에 비해 매우 미미하고, 사인 불명의 죽음에 대한 사인규명을 위한 행정적 목적의 검시는 형해화된 형편에 있어, 사인통계의 품질 저하와 관련하여 검시제도가 불명확한 사망원인의 요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변인이 되며, 결국 불비한 검시제도는 국가 사망원인통계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만다[3].

행정검시규칙(제3조, 제4조)에 따른 행정검시는 범죄와의 관련성이 없는 시체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결과 범죄와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므로, 행정검시의 일부는 사법부검으로 이어짐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의사의 검안 결과 범죄와의 관련성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으나 사인을 분명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의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현행 검시관련 법규는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법적, 행정적 관심 영역에 따라 개별법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관련 용어마저도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 법의학계의 통용 용어와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사이에 혼동이 발생할 여지가 없지 않다[2]. '해부'와 '부검'이라는 단어도 비슷한 의미이지만 완전히 동일한 용어로 보지는 않는다. 사전적 의미에 있어, 해부란 '생물체의 일부나 전부를 갈라 헤쳐 그 내부 구조와 각 부분 사이의 관련 및 병인(病因), 사인(死因) 따위를 조사하는 일'로, 부검이란 '해부하여 검사함'으로 정의되며[6], 법의학교과서에서도 부검이란 '시체를 해부하여 내부 장기 및 조직의 절개, 채취를 하여 시체를 검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7]. 시체해부법(제1조)에서는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과의학과 한의학을 포함)의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의 해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부의 범위에 사법부검까지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법에서는 양자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 상황에 따라서 법 규정의 해석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행정검시와 행정부검, 해부명령, 사법부검 등 용어의 개념과 실무적 적용에의 혼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행정검시는 경찰서장이, 행정부검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지자체장, 검역소장이, 사법부검은 검사와 판사가 각각 권한을 갖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면서, 검시(檢視, 檢屍)라는 단어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고, 더불어 행정검시, 행정부검, 해부명령, 사법부검의 범위와 경우, 실제 검시 또는 부검을 수행할 자의 자격이 법령 내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4].

행정검시라는 명칭을 궁리해보면 검찰과 법원이 개입하는 사법검시 혹은 사법부검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서 명명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시체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기 위함이라는 행정검시규칙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국가 강제력을 동원하는 사법검시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된 규칙으로 생각되는 바, 그렇다면 이는 예비검시라는 이름으로 개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정부검으로 갈 것인지, 사법부검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간절차로 활용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의료의 발달과 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사람의 수명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요양병원에서의 사망이 늘고 있다. 고령자의 사망에 있어서도 임종단계의 모습과 임상경과만으로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확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입원 중 침상에서의 낙상이나 음식물의 기도내 흡인으로 인한 외인사도 드물지 않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죽음은 행정검시로 처리하기도 어렵고, 행정부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결국 사법부

 https://doi.org/10.7580/kjlm.2019.43.1.1

검을 통해 사인을 규명하고 죽음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만다. 행정검시와 사법부검의 간극이 너무 크고, 행정부검까지를 포함하여도 죽음에 대한 온전한 조사를 담보하기에는 우리의 제도에는 너무 큰 허점을 안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또한 행정검시규칙에 따르면 그 대상 여부를 일차적으로 지구대장이 판단하고, 최종 결정을 경찰서장이 하며, 그 내용은 의사의 검안을 거쳐 행정검시조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인바, 이는 선후가 전도된 행정절차가 될 우려가 있다. 죽음에 대한 의학적 판단 이전에 수사기관이 대상 여부를 판단 및 결정하였고, 거기에 의사의 검안이 추가되도록 한 규정의 절차적 합리성에 대한 우려이다. 아울러, 의사의 검안이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그러한 검안의 실무를 담당할 자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의료법상의 검안 자격을 참고하면, 치과의사와 한의사에게도 검안의 자격 인정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행정검시규칙에서 규정하는 검안의사의 자격 요건을 검시의 목적에 맞추어 명확히 해둘 필요가 크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14932 판결)에서도 "... 자살과 같이 범죄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변사자나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시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한다고 하면서, 자연사, 외인사, 자살 등 죽음의 대상에 따라 검시의 종류가 구분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죽음에 대해서는 검시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고만 설시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검시를 하여야 하는지, 행정검시인지 사법검시인지, 아니면 부검까지를 포함하는 검시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 우리의 현행법에 있어서 죽음의 조사에 대한 규정이 얼마나 모호하고 부실한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행정부검과 사법부검을 분류하는 기준도 마땅치가 않다. 통상 이 두 가지 부검을 분류하는 근거는 부검을 의뢰하거나 그 절차를 주관하는 주체에 따른 분류일 뿐이며, 부검을 통해 사인과 사망의 상황을 재구성한 후에서야 행정부검의 대상인지, 아니면 사법부검의 대상인지의 여부가 명백히 확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시체의 발견 단계에서라면 양자는 명확히 구분되지도 않을뿐더러, 구분한다 해도 별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8]. 양자에 절차상의 차이가 있다면, 부검의 집행에 있어 행정부검은 유족의 서면 승낙을 요하지만(시체해부법 제4조), 사법부검은 동의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족에의 통보만으로 영장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정도이다.

해부와 관련한 법령에서 해부명령권자가 해부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그 구체적인 자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거나 모호한 규정으로만 그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 시체해부법 제2조 제6호에서는 그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시체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체를 해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체를 해부할 사람 등 시체 해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시체해부법 제2조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치과의사 포함)와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포함)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해부에 관한 일반적 자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학생교육 및 의학 연구목적을 위한 해부의 자격을 우선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해부의사의 자격으로서 감염병 전문의를 포함하여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전공 교원을 행정부검을 위한 해부의 자격요건으로 준용한다 하더라도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죽음과 국가적으로 중대한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감염병에 대한 사회 안전장치로서의 해부명령을 수행할 전문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자격기준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입법상의 미비라고 비난받을 여지가 크다. 검역조치로서의 해부명령에 의한 해부에 있어서도 그 자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이러한 입법상의 미비는 변사체에 대한 형사소송법(제222조)에 따른 해부에 있어서 더 크게 부각되고 만다. 범죄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는 이른바 변사체의 해부에 대하여는 훨씬 더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될 것이므로, 법적 자격요건에 있어서도 한층 더 강화된 기준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4].

우리의 현행법에는 죽음의 조사에 있어서는 범죄와 관련된 사망을 조사하는 사법부검과, 범죄와의 관련성이 없는 죽음에 대하여 사인규명과 감염병 관리 등을 위한 행정검시 또는 행정부검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국민의 죽음을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게 마련된 검시관련 법령이 필수적일 것이고, 그 형식과 내용은 검시의 목적과 대상을 차별하지 않고 포괄적이고 종합적이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나, 검시에 관한 우리의 현행법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죽음의 조사를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 용어마저도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못하여 일선에서의 검시업무에 혼동을 가져올 여지가 크다. 국민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자의 상당수가 요양병원에의 입원 중에 임종을 맞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사망에 있어 임종단계의 모습과 임상경과만으로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확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을 것이나, 거기에 대한 법적 대응은 허술하기만 하다. 행정검시의 기능은 범위가 모호하고, 행정부검은 제한적으로만 기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행법상의 검시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사인을 밝혀야 하는 본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국가의 강제처분으로서의 사법부검에 과도한

업무편중을 초래하고, 이는 곧 국가 강제력의 불필요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다. 행정검시와 해부명령, 사법부검과 병리부검까지를 망라하여 모든 죽음에 대한 조사와 범위, 각각의 업무수행을 위한 절차와 담당자의 자격요건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단일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사망자의 과거 병력과 진료기록에 대한 확인, 관련 자료의 확보를 위한 절차와 권한까지를 포함시켜, 죽음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것이 범죄수사와 감염병 관리 등 국가 기능의 극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하겠다.

ORCID: Youn Shin Kim: https://orcid.org/0000-0001-7407-0421; Tae Eun Kim: https://orcid.org/0000-0002-8727-5108

Conflicts of Interest

Youn Shin Kim, a contributing editor of the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was not involved in the editorial evaluation or decision to publish this article. All remaining authors have declared no conflicts of interest.

Acknowledg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No. 2017R1D1A3B03031691).

References

1. Toh JJ. The realities and reform of death investigation system. Seoul: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05. p. 11-182.
2. Kim HJ. Improve the administrative death investigation system. J Korea Contents Assoc 2012;12:276-83.
3. Koo HJ, Lee TY. The primary factors of uncertain cause of death between countries and the statistical influence of postmortem investigation system. Korean Criminol Rev 2011;22:173-99.
4. Kim YS, Kim TE. Review of legislation and regulations governing postmortem inspection and death certification. Korean J Leg Med 2018;42:77-91.
5. Moon GJ. Moon's modern forensic medicine. Seoul: Ilchokak; 1995. p. 6-24.
6. NAVER Corp. Korean dictionary [Internet]. Seongnam: NAVER Corp.; 2018 [cited 2018 Sep 28]. Available from: https://ko.dict.naver.com.
7. Chae JM. Death investigation and medico-legal examination of death. In: Kang DY, Kang HW, Kwak JS, et al., eds. Textbook of legal medicine. Seoul: Jungmunkag; 2007. p.23-38.
8. Seo YI, Chae JM, Park HK. Reform of medicolegal death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on the professionalism of involved personnel. J Forensic Investig Sci 2006;1:44-56.